

2025년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사업
특허 기술이전 지원기업 모집(2차)

대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“특허 기술이전”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5월 22일
 대전테크노파크원장

1 지원개요

○ (지원프로그램 및 내용)

프로그램명	지원내용	지원규모(부가세는 제외)		비고
특허 기술이전 (00건)	- 학.연 등 우수 특허를 기업으로 기술이전중개, 기술도입 비용 일부지원 - 기술이전 비용 : 정액(선금) 기술료에 한하며, 경상기술료는 기업 부담	기술료에 따라 12,500천원 이내 차등 지원		주1)
		기술료 기준	지원금	
		25백만원 미만	정액(선금)기술료에서 기업분담금 제외 금액, 최대 지원한도액 12.5백만원	

- 주1) 기술료 25백만원 이상의 특허로 신청도 가능. 한 기업에서 다수의 특허 기술이전 가능. 특허별 기술료 구분.
 * 예시1) 기술료 20,000천원인 기술이전 희망하고, 기업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경우(기업분담률 10%) : 지원금은 12,500천원임(=기술료 20,000천원의 90%인 18,000천원과 최대 지원한도액 12,500천원 중 적은 쪽 적용)
 * 예시2) 기술료 10,000천원인 기술이전 희망하는 경우 : 지원금은 9,000천원임(=기술료 10,000천원의 90%인 9,000천원과 최대 지원한도액 12,500천원 중 적은 쪽 적용)

○ (신청자격) 대전 소재 중소기업(법인사업자,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 또는 지점)

○ (신청조건)

프로그램명	내용
특허 기술이전	* 국내.외 등록된 특허의 기술이전만 해당(출원 특허는 제외). * 도입기술이 특허를 포함하지 않은 노하우 및 기술자문 만 일 경우 선정 제외 * 선정 후 기술이전 계약 시 계약서에 중개기관으로 대전테크노파크 명시 * 기술이전 비용 지원 시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납부(기술이전 지원금의 10%, 지원금 지급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원칙, 기한 지정 가능) * 협약기간 내 기술이전계약 체결, 기술이전료 납부,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

○ (기업부담금) 선정기업은 최근 년도* 매출 규모에 따라, 기업분담률(소요비용 중 현금 10%이상) 차등 적용. 즉, 기업부담금 = {소요비용의 공급가액 × 기업분담률(A)} + VAT

* 접수 마감일 까지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'2024년 재무제표' 제출이 어려운 기업은 2023년 재무제표를 최근년도 자료로 판단(자유양식 사유서 필).

구분(24년 매출)	30억원 이하	50억원 이하	100억원 이하	100억원 초과
기업분담률(A)(%)	10	15	20	25

○ (프로그램별 지원기간 및 추진절차)

프로그램명	지원기간	추진절차(선정 이후)						
특허 기술이전 (직접지원)	선정일~ 9.30.(화)	①발표평가 대전TP (~약 2주내)	▶	②결과통보 대전TP→ 기업	▶	③협약체결 2차(기업,대전 TP)(6월)	▶	④기술이전 중개 및 계약체결 대전TP, 기술보유 자(양도인), 기술 도입자(양수인)
		▶	⑤지원금신청 기업→대전TP (~9.30.까지)	▶	⑥정산 및 지원금지급 대전TP→기업 (10월)	▶	⑦기술이전 중개수수료 납부 지원기업→대전TP (11월내, 별도안내)	▶

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- (지원방법)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(대전TP → 수혜기업)
- (선정평가) 평가지표에 따른 발표평가
- (평가지표) ①지원 필요성(25) ②이전기술의 활용성(25) ③시장성(25) ④기대효과(25)

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(공고 및 신청기간) 2025.5.22.(목) ~ 6.11.(수) 18:00까지 (온라인 자동마감)
- (신청방법) 대전기업정보포털(DIPS, www.dip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① 대전기업정보포털(DIPS) 기업회원가입 → ② [사업공고] 메뉴 클릭 → ③진행상태가 [접수중]으로 되어있는 동 사업의 공고명 선택 후 → 하단에 온라인 [신청]버튼 클릭하여 정보 입력 → ④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완료 → ⑤ 접수확인을 위한 "접수증" 출력 후 보관

※ 가능한 모든 파일은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요망(도장/서명 날인본은 pdf로 추가 필)

※ 상기 ④단계에서 [사업계획서(신청서) 첨부] 란에는 1개의 파일 첨부 만 가능하고, 나머지 제출서류 들은 [기타 첨부파일] 란에 파일첨부 요망.

- (제출서류) 신청서(양식) 첫 페이지 참조
※ 온라인 제출 시 증빙서류 스캔 후 접수하되, 선정기업에 한해 요청시 원본 제출
- (문의처)

담당기관(부서)	문의내용	연락처
기술사업화실 정종백 과장	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일체	042-930-4813
운영지원실 정보화팀	온라인 접수 오류, 전산문의	042-251-2872

- (주 소)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, IT전용벤처타운건물 105호(기술사업화실)

3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선정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,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

- 신청서 접수 후 전담기관(대전TP)에서 면담/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차등 지원 가능
- 지원제한 및 지원금 환수 대상

-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% 이하인 기업
-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- 휴·폐업 중인 기업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 이외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(지자체 포함)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중인 자/기업(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선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예외로 함)
- 그 외 사항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과 동 요령의 [별표1]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준용
-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고의로 미기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제한 될 수 있음
 -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조치

- 본 사업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을 준용함.

붙임 : 신청서 1부. 끝.